



국내·외 주택연금 관련 사례 및 시사점

강영신 변병도 김찬호 최경진

국민의 주거 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

주택연금

국내·외 주택연금 관련 사례 및 시사점

2022. 12



-
- 저 자 : 강영신 연구원 (051-663-8178, 6094@hf.go.kr)
변병도 팀 장 (051-663-8170)
김찬호 차 장 (051-663-8155)
최경진 연구위원 (051-663-8169)
 -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5
3. 연구내용	5
II. 역모기지 및 유사 부동산 유동화 제도 개요	6
1. 대출방식(Loan Model)	6
2. 매각방식(Sale Model)	6
III. 국내 역모기지 및 유사 부동산 유동화 제도 사례	8
1. 대출방식	8
2. 매각방식	14
IV. 해외 역모기지 및 유사 부동산 유동화 제도 사례	17
1. 대출방식	17
2. 매각방식	28
< 참고 문 헌 >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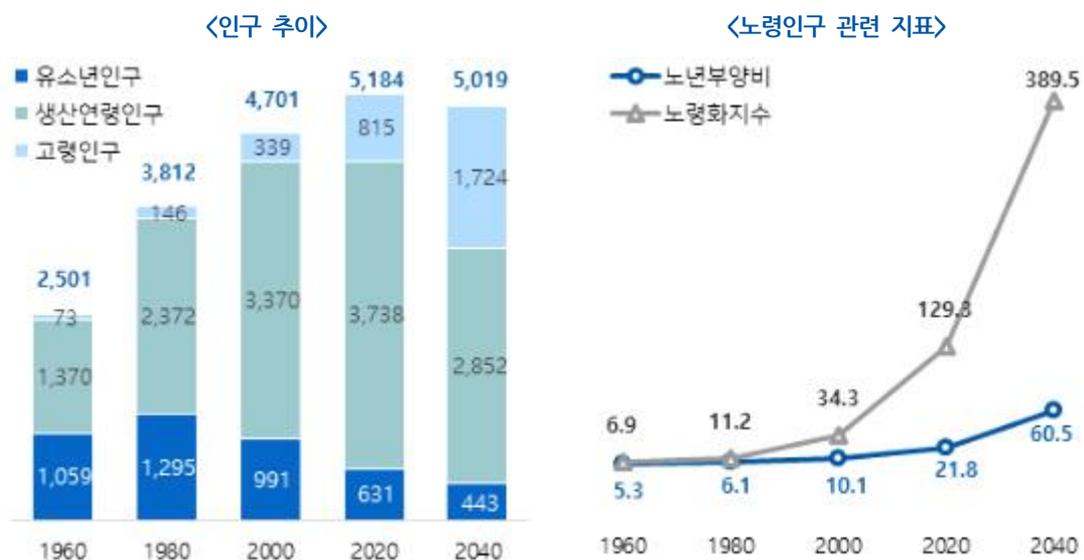
I. 서론

1. 연구배경

□ (고령인구 증가) 한국의 고령인구는 2000년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되어 2040년에는 총인구의 34.4%인 1,724만 명으로 전망

- 1960년 총인구의 2.9%였던 고령인구는 점차 증가하여 2000년에는 7.2%, 2020년에는 15.7%를 차지하였으며 2040년에는 총인구가 줄어드나 고령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생산연령인구 대비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나 유소년인구 대비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도 급격하게 증가
-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세대의 안정적 소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젊은 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그림 1〉 장래인구추계 주요 인구지표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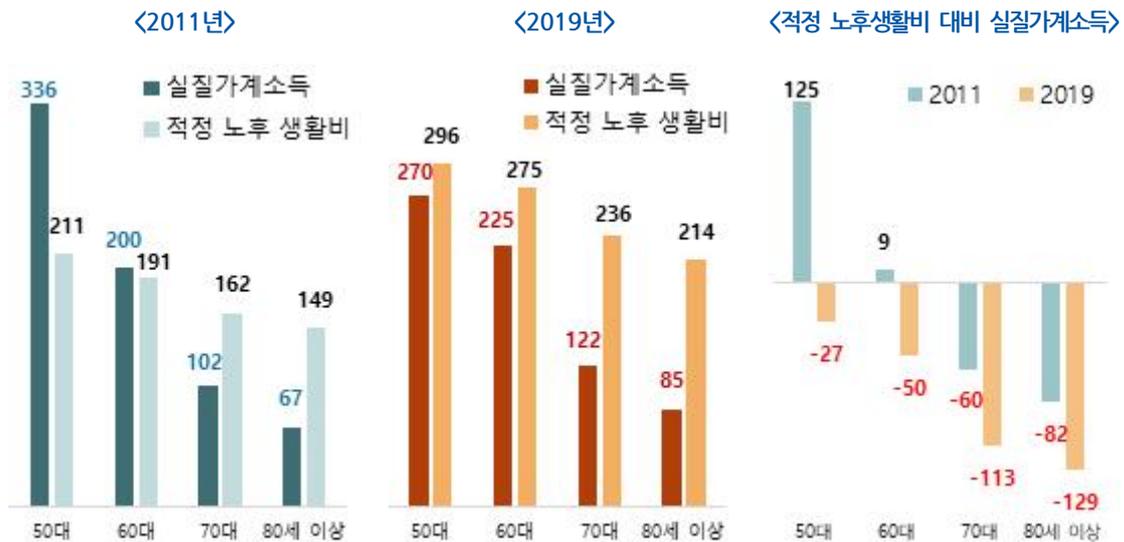
※ 주1) 유소년인구(0-14세), 생산연령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 주2) 노년부양비=고령인구/생산연령인구 * 100, 노령화지수=고령인구/유소년인구 * 100

- (실제 소득 및 노후 생활비) 연령별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와 실제 가계소득을 비교한 결과 5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실질가계소득이 부족한 편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족금액이 큰 편
 - 2011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실질가계소득 부족액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고령층의 실질가계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적정 노후생활비가 크게 증가한 것에서 기인함
 - 2011년 60대의 적정노후 생활비와 실질가계소득은 각각 191만원, 200만원으로 실질가계소득이 더 높았으나 2019년은 각각 275만원, 225만원으로 실질가계소득이 50만원 부족
 - 70대와 80대는 2011년부터 실질가계소득이 각각 60만원, 82만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는 부족액이 113만원, 129만원으로 더 증가함

〈그림 2〉 고령층 연령별 실질가계소득* 및 적정 노후 생활비*

(단위: 만원)



※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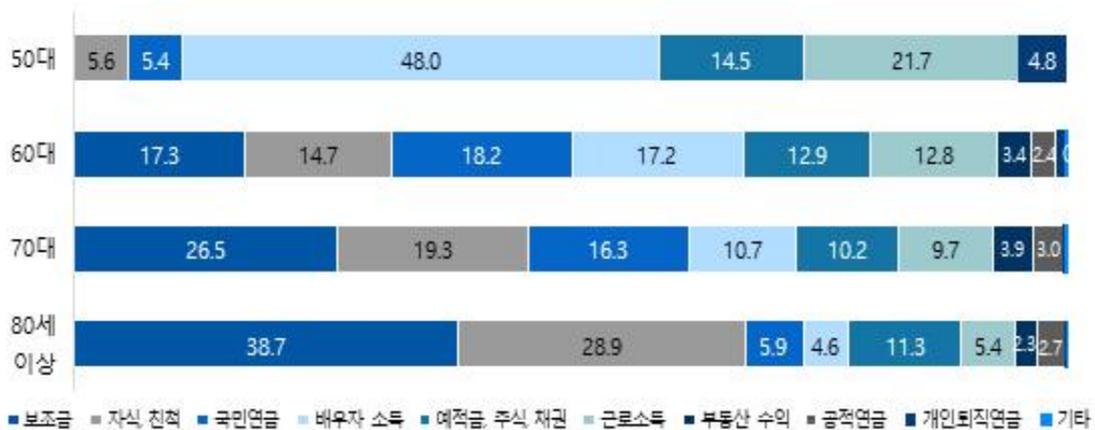
※ 주1) 실질가계소득: 통계청 CPI(2010=100)를 이용하여 산출

※ 주2) 적정 노후 생활비: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흡족한 비용

- 현재 노후소득 마련방법을 살펴보면 50대는 배우자소득과 근로소득이 주 수입원이나 그 이후에는 보조금, 자식이나 친척의 도움, 국민연금 등의 비중이 높아짐

- 법정 정년(만 60세) 이전인 50대는 배우자소득 및 근로소득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60대부터는 급격히 감소함
- 60대는 국민연금, 보조금, 배우자소득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조금이나 자식·친척의 도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앞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적정 노후 생활비에 대비 실제 가계소득부족액이 컸던 것과 함께 보면 보조금이나 자식·친척의 도움으로는 적정 노후 생활비 충당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짐

〈그림 3〉 노후소득 마련 방법(2019년)



※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 주1) 응답자 스스로 노후시기(노인이 된 이후의 시간을 의미함)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자에게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을 다중 응답(1순위~3순위)

□ 저출산, 장수화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은 고령층을 위한 복지재정의 증가와 연금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베이비 붐 세대(1955~1964년)가 법정 정년(만 60세)에 도래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

- 기초(노령)연금이 확대될수록 복지재정의 부담이 커지게 되며, 국민연금은 구조적 문제(저부담·고급여)와 사회 경제적 요인(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대체 현상 등)으로 예상되는 가입자 감소로 인한 재정 불안정 우려가 제기됨
- 게다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인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등)은 실제 급여수준이 높지 않아 적정 노후 생활비로는 부족한 편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43%, 실질소득대체율 24.3%(2022년 기준)

- 이러한 공적연금의 한계 보완을 위해 해외에서는 사적연금을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사적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고 엄밀한 의미의 연금은 아니지만 금융상품인 역모기지도 대안으로 대두

〈그림 4〉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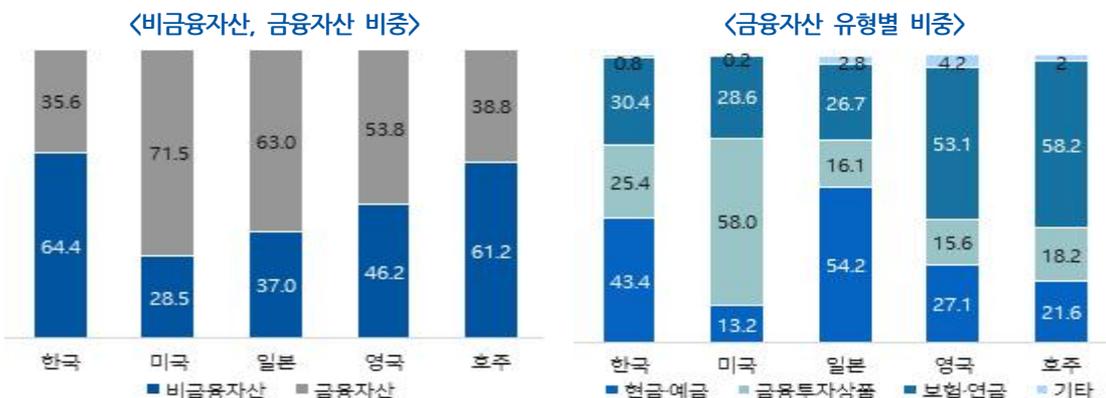


※ 자료 : 고제현(2022)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와 주택연금, 주택금융리서치 제27호 pp.36-45.

□ 타 국가에 비해 비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는 고령층이 보유중인 부동산 등을 유동화하여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할 필요 존재

- 한국의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은 35.6%로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에 비해 낮은 편
 - 금융자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국이나 호주에 비하여 보험·연금 비중이 낮은 편으로 한국과 일본은 현금·예금 자산 비중이 높은 편
- 가계의 안정적인 추가 소득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을 유동화하여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자산 유동화가 필요

〈그림 5〉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 비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2022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

2. 연구목적

- 국민연금이나 보조금으로도 부족한 적정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부동산자산 유동화 사례를 살펴보고, 주택연금과 비교하여 주택연금의 상품 매력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연구내용

- 연구의 주요내용은 역모기지 및 유사 부동산 유동화 개요, 국내외 관련 사례, 주택연금과의 비교분석으로 구성
 - 역모기지 및 유사 부동산 유동화에 대한 개요를 정리
 - 국내 사례를 대출방식과 매각방식으로 구분하여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에 대하여 서술하며, 해외사례도 대출방식, 매각방식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사례를 정리

II. 역모기지 및 유사 부동산 유동화 제도 개요

- 주택이나 농지 등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동화하여 연금 방식의 월지급금이나 일시인출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모기지 등의 부동산 유동화 제도는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대출방식과 매각방식으로 구분

1. 대출방식(Loan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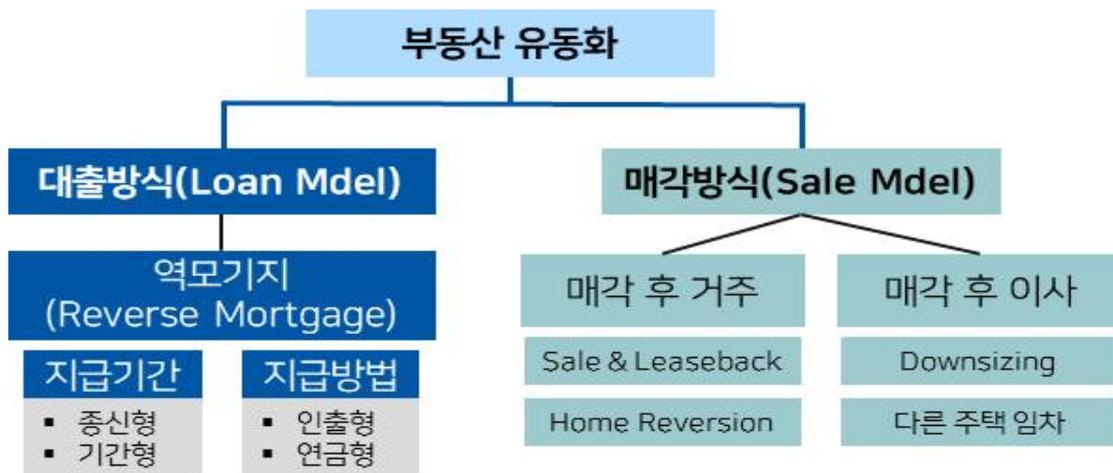
- 대출방식의 대표적인 예는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월 지급금을 받거나 또는 일정액을 일시불로 받는 대출 상품
 - 역모기지는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매달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상품
 - (소유권) 역모기지 담보주택 소유권은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지 않고 가입자의 종신 시까지 가입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는 방식
 - (사례) 국내에서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종신연금 형태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과 시중 은행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민간 역모기지가 존재 하며 주택연금과 같은 정부 보증 상품이나 주택이 아닌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이 있음

2. 매각방식(Sale Model)

- 매각방식은 소유권을 금융기관이나 매수인에게 넘기지만 해당 주택에 계속 해서 거주할 수 있는 방식
 - (소유권) 매각방식을 활용한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게 됨
 - 매각방식의 대표적 유형은 ‘Home Reversion Schemes’로 주택 지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하고 일시금을 수령하는 방식

- 주택 지분을 매각한 고령층은 평생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수령한 현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매각금액은 대개 일시불로 지불받게 되며 분할 출금은 불가능
- 매각방식의 경우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상환할 필요가 없고 이자도 발생하지 않음
- 그 외 비슷한 유형으로는 주택을 매각한 후 해당주택에 (장기)임차로 거주하는 ‘Sale & Leaseback’이 있음
- Sale & Leaseback은 주택 매각 후 일정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종신 시까지의 거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Home Reversion과의 차이
- (사례) 국내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운영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 대표적으로 LH에서 고령층의 주택을 매입하고, 주택 매입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

〈그림 6〉 부동산 유동화 제도



〈표 1〉 부동산 유동화 제도 비교

구분	대출방식	매각모델
소유권 이전	계약 종료 시	계약 시작 시
자산소유자	가입자	공급자
주택 관리	가입자	공급자
가격상승이익	가입자가 취득	공급자가 취득
가격하락위험	가입자가 부담	공급자가 부담

III. 국내 역모기지 및 유사 부동산 유동화 제도 사례

1. 대출방식

- 국내에서 공급되는 주택 유동화 상품 중 대출방식은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로 구분되나, 그 중 시중은행에서 운용하는 민간 역모기지는 거의 공급이 되지 않고 있음

- 그 외로는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농지연금으로 나뉨

1) 주택연금

- 공적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에서 고령 주택소유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위하여 2007년에 도입

-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주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 시까지 매달 월지급금을 받는 금융상품으로 본인 소유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

- 대상: 만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배우자)이며 대한민국 국민
- 담보조건: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며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다주택자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 이하면 가능)
- 기간: 계약은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점까지 유지되며 그 전까지 거주 가능
- 지급금액: 월지급금은 가입자(배우자)의 나이,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가입자의 생존확률,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월지급금은 계약 종료 시까지 고정됨
- 지급방법: ① 월지급금. ② 수시·일시 지급금(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상환, 주택수선유지비 등의 목적으로 활용가능)

〈표 2〉 주택연금 지급방식

구분		내용	
종신형	종신	지급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
		혼합	• 수시·일시인출금의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내에서 인출 가능하며, 그 외 금액을 종신 연금형태로 지급받음
	대출상환방식	• 담보주택의 대출 잔액을 상환 목적으로 일시 지급금(대출한도의 50~90%)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을 종신 연금형태로 지급	
	우대	지급	• 가입자(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인 경우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가능
혼합		•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 중 수시·일시 지급금(대출한도의 45%이내)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을 종신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방식	
기간형	확정기간 혼합방식	• 수시·일시인출금의 인출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하며, 그 외의 금액을 일정기간동안(10, 15, 20, 25, 30년) 연금형태로 지급받음	



※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 대출한도: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 수수료: 주택연금은 보증료와 대출이자를 지불하며 초기보증료(주택가격 × 해당 보증료율)는 첫 연금 수령 시 1회, 연보증료(보증잔액* × 해당 보증료율)는 일할 계산하여 매달 납부

* 보증잔액 = 월지급금 + 개별인출금 + 보증료 + 대출이자

〈표 3〉 지급방식별 보증료율

구분	종신방식, 기간형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
초기보증료	1.0%	1.5%	1.5%
연보증료	1.0%	0.75%	0.75%

※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특징: 대출 잔액이 주택가격을 넘어서게 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며, 주택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가입자(배우자)사망 후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
- 2007년 출시된 주택연금은 2016년 이후 연간 가입건수 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7〉 주택연금 가입건수 추이



※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 기타: 확정기간혼합방식('13.11)+사전가입방식('13.6~'14.5)+대출상환방식('16.4)+우대형('16.4)

2) 민간 역모기지

- 민간 역모기지는 1995년 처음 도입된 후 판매부진으로 중단되었으나, 2004년 조흥은행(신한은행), 농협, 흥국생명*에서 다시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기준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축협(지역농협) 등에서 운영 중

* 농협과 흥국생명의 역모기지는 공급량이 저조하거나 없었으며 현재는 운영하지 않음

- 신한은행의 ‘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은 연령 제한이 없음
 - 대출대상: 연령 제한 없이 주택 소유주면 가능
 - 담보조건: 본인명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금액: 담보물건 소재 지역, 대출기한,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별도의 한도는 없음
 - 지급방법: ① 매월 월지급금 지급, ② 대출금 추가지급(개별인출) 요청 가능
 - 대출 기간: 1년 이상, 최대 30년 이내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매월 대출이자 납부, 원금은 대출종료일에 상환)
 - 수수료: 부동산 담보 취득비용, 부동산 담보 말소비용
- 국민은행의 ‘KB 골든라이프 주택연금론’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주 중 생활비가 부족한 고객 등을 위한 상품
 - 대출대상: 만40세 이상 고객(단, 만 55세 미만의 경우 대출신청 접수일 기준 실직이나 폐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대출금액: 최대 10억원(연간 월지급금+개별 인출금 합산액 1억 미만)
 - 대출금리: 신규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 지급방법: ① 매월 월지급금 지급, ② 개별 인출금(의료비, 관혼상제비,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월지급금의 10배 이내), ③ 대출금 잔액에 대한 대출 이자
 - 대출 기간: 최소 10년 이상, 최장 30년 이내에서 5년 단위로 산정되나 개별 인출금, 주택가격 하락, 대출 금리의 상승 등으로 인해 연금 지급기간이 단축 될 수 있음
 - 특징: 월지급금이 매 5년 단위로 재계산되며, 재계산시점의 대출 금리에 따라 월지급금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됨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 담보조건: 주택, 복합용도건물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50% 이상이면 가능,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
 - 수수료: 인지세(고객, 은행이 50%씩 부담), 담보취득비용

- 농·축협이 '연금형 생활자금대출'은 고령 농업인을 위한 상품으로 농협은행이 아닌 농·축협(지역농협)에서 운영 중
 - 대출대상: 55세 이상 개인
 - 담보조건: 부동산 담보(단, 공장건물은 제외)
 - 대출금액: 농협 기준에 의한 여신가능금액 범위 내
 - 지급방법: ① 매월 월지급금 지급
 - 대출 기간: 최대 10년 이내
 - 특징: 대출약정금액을 정하여 약정기간(대출기간) 이내에서 그 금액 도달 시 까지 월 지급금 지급
 - 수수료: 인지세(고객, 은행이 50%씩 부담)

〈표 4〉 국내 민간 역모기지 비교

*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상품명	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	KB 골든라이프 주택연금론	연금형 생활자금대출
대출대상	연령제한 없음	만 40세 이상(만 55세 미만은 실직, 폐업 관련 서류 제출)	55세 이상
담보조건	본인명의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복합용도건물은 주거전용면적이 50% 이상이면 가능)	부동산 담보 (단, 공장건물은 제외)
대출금액	담보물건 소재지역, 대출기한,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별도의 한도는 없음	최대 10억원 (연간 월지급금+개별인출금 합산액은 1억 미만)	농협 기준에 의한 여신가능금액 범위 내
지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매월 월지급금 지급 • ② 대출금 추가지급 요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매월 월지급금 지급 • ② 개별인출금 (의료비, 관혼상제비,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월지급금의 10배 이내) 	월 지급금
대출기간	1년 이상~ 30년 이내	10년 이상~30년 이내	최대 10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가장 먼저 민간 역모기지를 재도입 • 계약자의 연령 및 대출금액 제한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지급금을 매 5년 단위로 재계산하며 해당시점의 대출금리에 따라 월지급금이 변동 • 개별 인출금, 주택가격 하락, 대출금리의 상승 등으로 인해 연금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은행이 아닌 농·축협에서 운영 • 대출약정금액 및 약정기간을 정하여 한도 도달 시까지 월 지급금 지급

※ 자료 : 각 은행 홈페이지

3) 농지연금

□ 농지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국민 평균보다 낮은 농민들의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

- 대상: 만 65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
- 담보조건: 농지
- 지급금액: 월지급금은 가입자(배우자)의 나이,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가입자의 생존확률,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월지급금은 계약 종료 시까지 고정됨
- 지급방법: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구분되며 종신형은 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으로, 기간형은 정액형, 경영이양형으로 세분화 됨
 - 종신형: 사망 시까지 매월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형식
 - 기간형: 일정기간(5, 10, 15년)동안 월지급금 지급

〈표 5〉 농지연금 지급방식

구분		내용	
종신형	정액형	기본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
		우대형	• 저소득, 장기영농 가입자에게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 (저소득 10%, 장기영농 5%)
	전후후박형	• 정액형 대비 최초 10년간은 더 많이, 그 이후로는 더 적게 지급	
	수시인출형	• 총 대출한도의 30% 내에서 수시·일시 인출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으로 월지급금 지급	
기간형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	
	경영이양형	• 연금지급 종료 후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연금채무 상환을 약정	

※ 자료 : 농지은행

- 수수료: 위험부담금(농지연금채권액의 연 0.5%)과 약정이자(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를 지원약정 해지 시 납부
- 가입추이: 최근 가입 건수를 살펴보면 종신형의 비중이 높으며 기간형의 경우 기간이 길수록 비중이 높은 편

〈그림 8〉 농지연금 가입건수 추이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 경기, 강원 등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의 월 지급금이 높은 편이며 지역별 평균 월지급금을 살펴보면 최대 146만원(경기도)에서 최저 42만원(전북)으로 나타남
- 농지연금은 연금방식으로 월지급금을 받는 대출상품이라는 점에서는 주택연금과 동일하나 담보물이 농지이며 농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 매각방식

- 한국의 부동산자산 유동화 매각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2018년 도입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이 대표적

1)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고령 주택소유주가 LH에 주택을 매각하고 대금을 최대 30년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
 - 대상: 만 60세 이상
 - 담보조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단독, 다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며 가격 제한은 없음

- 주택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 다가구 주택 중 즉시 공급 가능한 주택
 - 주택 사용승인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중 주택 전체가 공가(예정)인 주택
 - 지급기간: 최소 10년~최장 30년 이내
 - 지급방법: 주택 매각 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매월 지급
 - 주택 매입금액: 공인감정평가기관 2곳의 감정평가액 평균
 - 이자: 해당 시점의 잔금에 대해 복리로 계산,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전년도 12월 평균)를 1년마다 변동하여 적용
 - 수수료: 없음
-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가입자의 주택 소유권이 내로 넘어간다는 점이 주택연금과의 가장 큰 차이로, 가입자는 주택연금에 비해 높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떠나 새로운 주택에 정착해야함
- 가입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을 충족할 경우 본인이 매도한 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근처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 가능
- 2018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시범사업 계약이 단 2건이었으며 2019년 1차 모집에는 3건이 계약되어 2019년 2차 모집 이후 매입 공고가 없음

2) 신탁방식 주택연금

- HF에서 2021년 도입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위탁자)가 HF(수탁자)에 주택을 이전(신탁)하고 HF는 신탁의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주택연금 대출을 보증하는 방식의 주택연금

-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계약 시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은 아니나 HF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매각방식과 유사
-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주택연금과 동일
 - 대상: 만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배우자)
 - 담보조건: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며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다주택자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 이하면 가능)
- (수급권 보호) 주택소유자 사망 시 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 승계하여 고령자의 주거안정(종신거주) 및 노후소득 보장(종신지급)
- (거주권) 위탁자는 신탁주택을 사실상 점유·사용*하고, 신탁주택에 대한 유지·수선 등 실질적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 신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수익 수취 허용
- (유희공간 활용) 저당권 방식인 일반 주택연금과 달리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권과 임대차 보증금이 HF로 이전되어 채권확보가 가능하므로 유희 공간을 임대하여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
- (수수료) 신탁설정 관련 세금 및 법무사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

〈표 6〉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별 차이

구분	저당권 방식	신탁 방식
담보제공	저당권 설정	신탁 등기
담보 소유권	가입자	HF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세금*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611천원	7천원

※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 70세, 주택가격 5억 기준

IV. 해외 역모기지 및 유사 부동산 유동화 제도 사례

□ 해외 사례도 대출방식과 매각방식을 구분하여 살펴봄

-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택연금과 유사한 제도에 대해 Equity Release Scheme(이하 ERS)라고 표현하고 이는 대출방식과 매각방식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임
 - 유럽 내에서 대출방식, 매각방식 두 가지를 다 운영 중인 국가는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이며 이 중 영국이 가장 활발하게 운용 중
- 그 외 국가들은 별도의 용어를 정해두고 있지는 않으며 각 국가별로 다른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음
- 해외 부동산자산 유동화 사례는 대출방식과 매각방식 둘 다 존재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가입조건, 지급방식 등에 대하여 정리함

1. 대출방식

1) 미국

□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 HECM) 미국의 역모기지는 정부(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이하 HUD)에서 보증하는 방식

- (가입조건) 연령 제한이 있으며 가입 시 세금 납부 가능성을 확인
 - 연령: 62세 이상
 - 소득: 가입 후 세금, 주택보험료 미납 가능성 판단을 위하여 가입자의 재무 현황을 확인
 - 대출한도: 가입시점의 주택평가가격 × PLF*

* PLF(Principal Limit Factor): 가입자 중 연소자의 연령과 예상미래이자율을 기반으로 산출

- (지급방식) 종신행, 기간형, 수시인출형(신용 한도 내에서 시기의 제약 없이 인출 가능), 종신흘합형(종신티급, 수시인출의 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형(확정지급과 수시인출의 혼합방식), 일시인출형(일시금으로 수령하며 추가 인출은 불가능)의 방식으로 지급됨
 - 가입자 대부분이 종신행을 선택하는 한국 주택연금과 달리 HECM 가입자는 수시인출형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 편
 - (수수료) 가입자는 취급수수료, 상담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를 신청 시에 지불하며 관리수수료, 연보증료, 대출이자는 주기적으로 발생
 - (신용상담) 가입자는 HECM 가입 전 HUD에서 승인한 별도의 상담기관과 상담 후 상담인증서를 발급받아야 가입이 가능함
- (HMBS, HECM Backed Securities) HECM의 확대에 따라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2007년부터 Ginnie Mae가 지급보증을 하는 역모기지 유동화 증권(이하 HMBS)을 발행
- HECM은 공급초기 Fannie Mae(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의 채권매입으로 유동성이 공급되었으나 과도한 리스크 부담으로 2010년 채권매입이 중단됨
 - HMBS에 대한 Ginnie Mae의 발급보증, FHA의 지급보증은 신용강화로 이어져 2차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됨

2) 영국

- (Lifetime Mortgage) 영국의 역모기지인 Lifetime Mortgage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공급하며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감독을 받는 구조
- (가입 조건) 연령, 담보 주택 등에 대한 가입 조건이 존재하나 금융기관 별로 차이가 있음
 - 연령: 만 55세 이상 가입 가능하나 일부상품은 만 50세 이상 또는 가입연령에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음

- 담보주택: 70,000파운드(약 1.1억원¹⁾)이상의 주택이어야 하나 일부상품은 주택 가격 제한 없음
- 최소 대출액: 10,000파운드(약 1,600만원)이상
- 대출한도: 최대 4,000,000파운드(약 65.3억원)까지 존재하나 평균적으로는 750,000파운드(약 12.3억원)
- (지급방식) Lifetime mortgage의 대출금 지급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Lump sum, Drawdown, Interest Serviced, Impaired life(Lump sum+Drawdown)이나 대부분 Lump sum 상품이나 Drawdown 상품을 이용
 - Lump sum: 가입 초기에 일시 대출금 수령
 - Drawdown: 총 대출액 한도 내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가입자의 필요시마다 소액의 대출금 수령
- (이자) 대부분 고정금리이나 변동금리도 존재

3) 일본

- (배경) 일본 역모기지는 공적, 민간 방식이 공존하고 있으며 공적 역모기지는 1981년 지자체 자체 역모기지로 시작되어 2003년 출시된 정부 가입 역모기지 '장기생활지원금대출'로 이어짐
 - (장기생활지원금대출) 2003년 출시된 장기생활지원금대출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가 대상으로 후생노동성의 장기생활지원금대출 제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역모기지이나 실적은 저조
- (リ・バース60, 리버스60) 일본 주택금융지원기구(JHF, Japan Housing Finance Agency)와 협약을 맺은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역모기지
 - (가입조건) 연령, 대출한도 등에 대한 가입조건이 있으나 금융기관별로 다름
 - 연령: 만 60세 이상(만 50세~59세도 이용 가능하나 대출한도가 낮아짐)

1) 하나은행 매매기준율('22.11.2 기준)

- 대출한도: 담보주택(토지 포함) 가격의 50~60% 이내(50~59세는 30%)로 최대 8,000만엔(약 7.7억원)까지 대출되나 대출 용도에 해당하는 액수만 가능
- 대출 용도: 주택 건설구입리모델링, 고령자용 서비스주택 입주 일시금, 대출 상환 등
- 담보주택: 내진기준을 충족하는 단독주택(토지 포함)
- (이자) 취급 금융기관과 옵션에 따라 이자가 다름
- 매월 이자를 상환하는 이자상환방식과 이자가 대출 잔액에 포함되어 계약 종료 시 일시에 상환하는 잔액합산방식으로 구분
- 가입자는 가입 시 담보주택 매각 가치 이상으로 대출한 잔액에 대하여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의 상환 의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상환 의무가 없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용 금리가 높아짐
- 월 지급금을 지급받아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게 되는 타 국가의 방식과 달리 리버스60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가입자의 사망시점까지 연장하고, 원금을 사망 이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 상환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
- (민간 역모기지)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였으며 은행·지방은행이나 신탁은행 등에서 취급하며 은행별로 조건이 상이함
- 제한된 목적을 위한 일시 지급금만 지급하는 리버스60과 달리 민간 역모기지 상품은 월 지급금을 지급하며,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상품도 있음

4) 홍콩

□ Reverse Mortgage Programme(RMP)

- (개요)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역모기지 대출로 홍콩에서 모기지를 취급하는 HKMC(The Hong Kong Mortgage Corporation Limited)의 자회사 HKMCI(HKMC Insurance Limited)에서 운영
- (가입조건) 연령, 담보주택 등에 대한 가입 조건이 존재
 - 연령: 만 55세 이상
 - 담보주택: 50년 미만의 주택

- (지급방식) 월지급금(종신형, 기간형), 일시지급금(모기지 상환, 주택 리모델링, 의료비 등의 특수한 목적이 있을 경우 가능)
- (수수료)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 선 보증료 및 월 보증료를 지불
- (사전 상담) RMP 신청 전 역모기지의 특징,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법적결과 등의 정보 숙지를 위한 신용 상담이 필수
- (특이사항) 2016년 토지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는 공공주택인 SSFs*에 대해서도 RMP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 SSF(Subsidized Sale Flat): 공공주택의 하나로 토지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일반주택대비 저렴하나 토지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음

- 공개시장가액에서 토지프리미엄을 제외한 가격을 담보주택 가치로 인정받게 됨

□ Policy Reverse Mortgage Programme(PRMP)

- (개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와는 다르게 생명보험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
- (가입조건) 연령, 보험 조건 등의 가입조건이 존재
 - 연령: 만 60세 이상
 - 보험 조건: 가입자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가입한 홍콩 공인 보험사의 상품으로 홍콩달러나 미국달러로 지불액이 표시되어야 함
- (지급방식) 일시지급금(특정 목적)과 월지급금(종신형, 기간형) 수령 가능
 - 일시지급금: 모기지 상환, 주택 보수, 미납보험료 납부, 대출 상환 등의 사유로만 가능하며 최대 보험 가치의 90%까지 가능
 - 월 지급금: 연령, 성별, 지불기간, 생명보험 사망 지급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고정금리일 경우 변동금리보다 월 지급금이 높아짐
- (수수료) 선 보증료 및 월 보증료를 지불하여야하며, 지급기간을 변경하거나 일시 지급금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

5) 싱가포르

□ (Home equity Income Loan) 민간 금융기관인 싱가포르 개발은행 (DBS)에서 2021년 출시한 상품으로 종신연금과 연계됨

- (배경) 1997년 이후 NTUC income와 OCBS bank에서 공급하였으나 실적 부진으로 2009년 이후 판매가 중단되었다가 이후 2021년 DBS에서 중앙 연금기금(Central Provident Fund, 이후 CPF)와 연계하여 재출시
- (가입조건) 담보주택, 연령 등에 대한 조건 존재
 - 연령: 65세 이상 79세 이하
 - 담보주택: 대출이 없는 민간주택(Private Residential Property)
 - 대출기간: 최대 30년(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95세가 되는 시점까지 가능)
 - 최대 대출액: CPF 적립 한도까지
- (지급방식) 대출금을 CPF 은퇴계정(Retirement Account)에 추가로 적립하여 종신연금의 수령액을 높이는 방식
- (특징) 대출 종료 시 소구권을 행사

6) 캐나다

□ (CHIP, Canadian Home Income Plan) 캐나다에서는 민간 금융기관들이 1986년부터 CHIP를 운영하고 있음

- (가입조건) 연령, 담보주택 하한가격 등에 대한 조건이 존재
 - 연령: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 담보주택: 250,000달러 이상의 주택(약 2.6억원)
 - 최소 대출액: 최소 선지급금 25,000달러(약 2,600만원)
 - 대출한도: 주택가치의 55% 이내, 주택유형·상태·감정가격 등 주택 조건, 주택 위치, 가입자 및 배우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총 대출액을 결정

- (지급방식) 일시금, 월지급금(종신형, 기간형)
- (이자) 변동금리형과 고정금리형이 있으며 고정금리의 경우 일정기간(6개월, 1년, 3년, 5년)마다 재산정
- (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률자문·공증 수수료
- (특징) 정부 보조금 수령을 위한 소득 수준 측정 시 고려대상이 아님

7) 호주

□ (Reverse Mortgage) 호주의 역모기지 는 기본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각 기관마다 대출 조건이 다른 편

- (가입조건) 각 기관마다 연령, 최대 대출액, 최소 대출액 등이 상이함
 - 연령: 대개 60~65세 이상이나 가입자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이 60세가 넘고, 다른 한명이 55세 이상이어도 가입가능
 - 주택요건: 금융기관별로 다름
 - 대출한도: 나이(가입자, 배우자 중 연소자기준) 및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됨

〈표 7〉 호주 역모기지 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LTV)

나이	55세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85세	90세
대출한도	15%	20%	25%	30%	35%	40%	45%	50%

※ 자료 : REVERSE MORTGAGE INSIGHTS

- 최소 대출액: 10,000달러(약 900만원)
 - (지급방식) 월지급금, 초기인출금, 특정한 목적(집수리, 건강관리 등)의 인출금
- (Home Equity Access Scheme) 기존 받고 있던 연금 지급액에 주택을 담보로 지급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품
- (배경) 연방정부는 기존 연금대출제도인 Centrelink pension Loans Scheme을 보완한 Home Equity Access Scheme을 재출시하여 주택자산 유동화를

통해 연금지급액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 (가입조건) 가입대상 및 소득 등에 대한 조건이 있음
 - 가입자격: 연금 수급 대상자(노령연금, 장애지원연금 등)
 - 소득 제한: 독신은 36,121달러(약 3,300만원), 부부는 54,451달러(약 5,000만원) 미만
 - 대출한도: 가입자(배우자)의 나이, 담보주택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지급방식은 연금에 더하여 받는 방식과 일시인출 두 가지가 가능
 - (연금) 2주 단위로 받는 노령연금에 대출액을 더하여 받을 수 있으며 노령연금+대출액은 기존 금액의 150%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일시금) 지난 26주간 받은 대출액의 50%까지 가능
- (이자) 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이율(2022.10월 기준 3.95%)을 적용

8) 스페인

□ (Hipoteca Inversa: Reverse Mortgage) 역모기지상품으로 주택을 담보로 월 지급금을 받는 형태

- (가입조건) 연령,
 -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출한도: 주택 감정가의 25%~50%
- (지급기간) 종신형(Lifetime Mortgage), 기간형(Temporary Mortgage)
- (계약 종료) 가입자가 사망하면 역모기지는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상속인은
 - ① 주택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출을 상환하거나, ② 집을 팔아 대출을 상환, ③ 금융기관에 집을 넘기는 세 가지 선택 중 하나를 선택
- (현황) 스페인에서 역모기지는 가입자가 거의 없는 편이나 2022년 Santander은행과 Mapfre가 연합하여 역모기지 관련 자회사를 설립

9) 아일랜드

□ (Lifetime Loan) 주택가치 일부만큼의 금액을 고정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Spry Finance에서 공급

- (가입조건) 연령, 주택가격 등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음
 - 가입연령: 가입자(배우자)가 60세 이상
 - 주택 가격: 더블린 250,000 유로 이상(약 3.5억원), 그 외 지역 175,000 유로 (약 2.5억원) 이상
 - 담보주택 조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임대의 경우 잔여기간이 99년 이상
 - 대출한도: 연령별로 대출한도가 다르나 최대 대출한도는 500,000 유로(약 7억원)

〈표 8〉 아일랜드 역모기지 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LTV)

나이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85세 이상
대출한도	15%	20%	25%	30%	35%	40%

※ 자료 : Spry finance 홈페이지

- 최소 대출액: 20,000 유로(약 2,800만원)
- (지급방식) 월지급금 방식, 일시 지급금
- (이자) 고정금리를 복리로 적용하며 '22.10월 기준 6.45%
- (가입조건) 연령, 대출한도 등에 대한 가입조건이 있으나 금융기관별로 다름
 - 연령: 만 60세 이상(만 50세~59세도 이용 가능하나 대출한도가 낮아짐)
 - 대출한도: 담보주택(토지 포함) 가격의 50~60% 이내(50~59세는 30%)로 최대 8,000만엔까지 대출되나 대출 용도에 해당하는 자금만 대출 가능
 - 대출 용도: 주택 건설·구입·리모델링, 고령자용 서비스주택 입주 일시금, 대출 상환 등
 - 담보주택: 수도권 중심으로만 가입 가능하며, 단독주택만 인정
- (이자) 취급 금융기관에 따라 이자가 다름

- 매월 이자를 상환하는 이자상환방식과 이자가 대출 잔액에 포함되어 계약 종료 시 일시에 상환하는 잔액합산방식으로 구분
- (상속) 가입자는 가입 시 담보주택 매각 가치 이상으로 대출한 잔액에 대하여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의 상환 의무를 선택할 수 있음
- 상속인의 상환 의무가 없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용 금리가 높아짐

〈표 9〉 국가별 대출방식 상품 비교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스페인
상품명	HECM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Lifetime Mortgage	リバース60	RMP (Reverse Mortgage Programme)	PRMP (Policy Reverse Mortgage Programme)	Home Equity Income Loan	CHIP	Reverse Mortgage	Home Equity Access Scheme	Hipoteca Inversa
운영주체	주택도시개발부 (HUD) 산하 연방주택청(FHA)	민간 금융기관	민간금융기관 공급 JHF 보증	홍콩모기지유한공사 (HKMC)		민간금융기관 중앙연금기금 (CPF)	민간 금융기관	민간 금융기관	연방정부	민간 금융기관
가입대상	만 62세 이상	만 55세 이상 (연령 제한이 없는 상품도 존재)	만 60세 이상 (만 50~59세는 대출한도 감소)	만 55세 이상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79세 이하	만 55세 이상	기관별로 다르나 만 55세 이상	연금 수급 대상자	만 65세 이상
담보조건	제한없음	£ 70,000 이상 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불가)	내진기준을 충족하는 단독주택	건축연한 50년 이하 주택	홍콩달러 또는 미국달러로 보험료 지불이 완료된 보험	대출이 없는 민간주택	\$ 250,000 이상 주택	금융기관 별로 다름	-	금융기관 별로 다름
대출한도	나이, 주택 가격 등을 고려 Min(주택가격, \$970,800)×PLF*	최대 £ 4,000,000 평균 £ 750,000	• 담보가치의 50~60% 이내 (50~59세는 30%) • 최대 8,000만엔	최대인정한도 HK\$25m(약 38억)	-	중앙연금기금 적립한도 까지	주택가치의 55% 이내	연령별로 다르나 최대 주택가치의 50% 이내	나이,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	주택 감정가의 25%~ 50%
지급방식	• 종신(혼합)방식 • 확정(혼합)방식 • 한도설정방식 • 총액인출방식	• 일시 인출 • 수시인출 • 혼합형	• 일시 인출	• 일시 인출 • 월지급금	• 종신연금 수령액 증가	• 일시 인출 • 월지급금	• 일시 인출 • 월지급금 • 수시 인출	• 일시 인출 • 연금 수령액 증가	• 월지급금	
기간	• 종신형 • 기간형	종신형	종신형	• 종신형 • 기간형	• 종신형 • 기간형	최대 30년 (가입자가 95세 될 때까지)	• 종신형 • 기간형	종신형	종신형	• 종신형 • 기간형
특징	가입 전 신용상담이 필수		취급 금융기관별로 이자가 상이	• 상담전문 변호사 제도 • SSFs 가입가능	사망보험금 역모기지	주택자산 유동화로 종신연금 수령액 증가	정부 보조금을 위한 소득 측정 시 월지급금은 제외	주택자산 유동화로 연금지급액 증가	계약 종료 시 상속인이 상속을 선택할 수 있음	

※ 주) PLF(Principal Limit Factor)는 LTV(Loan-to-Value)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령별로 상이

2. 매각방식

- 매각방식의 경우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가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는 점이 차이점

1) 미국

- (sale and leaseback) 기업들이 자금 유동화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팔고 재임차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용어로, 개인 소유의 주택을 판매 후 재임차하는 것까지 포함됨
 - (배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자 미국 자산규모 1위 은행인 BoA(Bank of America)에서 2008년 도입
 - (개요) 모기지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해 곧 주택이 압류 당하게 될 주택 소유주가 대상으로 은행에 주택 소유권을 넘기지만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함
 - 최소 3년간 임차가 가능하며, 이후 재계약이 가능한 구조로 시세보다 임대료를 약간 저렴하게 제공
 -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자들의 파산을 막고 주택가격 하락기에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임대료를 받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주택경기가 회복되면 주택을 판매하여 이득을 보는 구조
 - 일반적인 Sale and Leaseback과 달리 은행에 집 소유권을 넘긴 대출자들은 추후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없음
 - 고령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대상이었으며, 따라서 연령 등의 가입조건은 없었음

2) 영국

- (Home Reversion) 가입자가 주택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고 종신 시까지 거주권을 인정받는 방식
 - (가입조건) 연령, 담보주택 가격 등에 대한 제한이 있으나 민간 금융기관 (Reversion Company)에서 운영하여 조건이 다름
 - 연령: 65세 이상 가입가능하나 연령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음
 - 담보주택: 80,000파운드(약1.3억원) 이상
 - 최소 유동화(Release) 규모: 10,000 파운드(약 1,600만원)
 - (지급방식) 일시금(Lump sum)
 - (주택 가격 변동) 가입자가 주택지분의 일부만 매각한 경우 남은 본인 지분에 대한 주택가격 상승분은 수익을 누릴 수 있음
 - (특징) 평생 거주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주택 감정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에 매각이 이루어지며, 임대료 지불 없이 평생 거주가 가능
- (Sale and lease back) 가입자가 주택을 판매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다는 점은 Home Reversion과 비슷하나 평생 거주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다름

3) 프랑스

- (Viager)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개인과의 주택 매매 거래 시 활용되는 방법이며, 은행에서 취급하는 Pret Viager Hypothecaire는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됨
 - (개요) 부동산 매매 시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 (점유) 판매자(고령층)이 사망 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방식과 계약시점부터 구매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 (가입조건) 개인 간의 사적 계약으로 제약조건은 따로 없음
- (지급방식) 계약별로 지급방식이 다르나 소유권을 매각한 매도인은 사망 시 까지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20~30%는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종신연금의 형태로 지급
- (세금 혜택) Viager로 받는 매매대금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으며, 계약 당시 연령대 기준으로 세금 공제 혜택이 정해짐

〈표 10〉 프랑스 Viager 세금 공제 혜택

연령대	50세 이전	50대	60대	70대 이상
공제비율	30%	50%	60%	70%

※ 자료 : Viager-europe.com

- (현황) Viager 계약은 가족 내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높은 편
- (수수료) 계약과정에서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함에 따라 공증 수수료를 지불
- (특징) 질병을 가지고 있던 매도인이 Viager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사망 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4) 일본

□ (リースバック, 리스백) 주택을 매각한 후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거주하는 sale and Leaseback 방식이 존재함

- (개요) 일반적으로 부동산회사에 주택을 매매하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맺어 계속 거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장점) 리스백의 장점으로 ①주택 매매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② 일반적인 주택 판매보다도 더 짧은 시간·단순한 방법으로 집을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점

- (단점) ① 주택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낮을 수 있으며, ② 종신 시까지의 거주가 보장되지 않는 점, ③ 임대료(연세 매매가격의 7~13%)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

5) 싱가포르

□ (Lease buyback Scheme) 싱가포르의 주택개발청(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이하 HDB)에서 운영하며 공공주택의 잔여 임대기간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

- (배경) 싱가포르 주택의 3/4는 HDB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공공주택)으로 부동산자산 유동화를 통한 노후소득 마련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잔여 임대기간을 매각하는 방식을 도입
- (가입조건) 연령이나 소득 조건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잔여 임대기간에 대한 조건도 존재함
 - 연령: 만 65세 이상 1주택자
 - 대상주택: 모든 HDB 공급주택
 - 소득: 월 가구소득 14,000싱가포르달러(약 1,400만원) 이하
 - 잔여 임대기간: 최소 20년 이상
 - 최소 거주기간: 가입 이전까지 해당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
- (지급방식) 매각한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금액은 CPF 은퇴계정에 추가로 적립하여 종신연금의 수령액을 높이는 방식
- 가입자가 임대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 배우자 및 가족은 임대 잔여기간 동안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잔여 임대기간을 HDB에 상환하고 해당 가치를 받을 수 있음

6) 호주

- (Home sale proceeds sharing) 주택의 일부 지분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매입한 금융회사는 계약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분 수익금을 받아가는 구조
 - (개요) Bendigo Bank에서 'Homesafe Wealth Release' 단독 공급
 - (특징) 미래가치의 지분을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분의 비중은 달라지지 않으나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라 지분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음
 - (가입조건) 연령, 지역 등의 조건이 있음
 - 가입연령: 만 60세 이상
 - 담보주택 지역: 시드니, 멜버른의 주택이 대상임
 - 일시 인출 한도: 일시인출금은 25,000달러~ 1,000,000달러(약 2,300만원 ~ 9억원)
 - 대출 한도: 65%이내의 지분을 판매가능
 - (수수료) 거래 수수료, 담보주택 감정평가 수수료

- (Equity Release Agreement) 지분을 매각한다는 점에서 Home Reversion과 비슷하나 임대료 개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것이 차이점
 - (개요) 한명 이상의 투자자로 이루어진 부동산 투자펀드에 담보주택의 지분을 판매하고 금액을 일시불 또는 월지급금의 형식으로 받으나 대신 매각한 주택 지분만큼의 수수료(임대료)를 지불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방식
 - (특징) 현재의 가치로 산정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지분을 판매하고, 일정 기간마다 수수료(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해당 지분을 펀드에 넘기게 됨
 - 해당 수수료는 펀드에 넘긴 지분에 대한 정해진 비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상승하는 구조
 - (계약 종료)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증가함에 따라 줄어들게 되며, 지분을 모두 매각한 이후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이주해야할 수도 있음

7) 스페인

- 스페인의 부동산자산 유동화 매각방식은 Venta con Alquiler Garantizado, Renta Vitalicia Inmobiliaria, Nuda Propiedad 세 가지로 용익권* 보장, 지급방식에 따라 구분됨

* 용익권: 타인의 소유물 또는 권리를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물권으로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의 민법은 인정하나 한국 민법은 인정하지 않음

- (Venta con Alquiler Garantizado: Sale and lease back) 고령자 주택을 매각한 이후 신규 구매자와의 임대 계약을 통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방식으로 계약시점에 해당 부동산 등록부에 기록

- 계약 기간: 종신 임대, 기간형 임대(5, 10, 12, 15년 등)
- 수수료: 주택을 매각한 고령층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나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Renta Vitalicia Inmobiliaria) 주택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과 용익권으로 구분하여 고령자들이 집의 소유권을 판매하고 종신 용익권을 인정받아 월 지급금을 받는 상품으로 거주 안정을 보장

- 가입대상: 65세부터 이용할 수 있으나 75세 이상에게 권유됨
- 지급방식: 종신형, 기간형이 있으며 그 외에 고령자가 요양시설 등에 들어갈 경우 거주권을 포기하고 월지급금을 높일 수 있음
- 세금 혜택: 70세 이상은 월지급금의 92%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현황: 금융회사에서 공급되기보단 가족 간의 사적계약으로 활용되는 편
- 특징: 공증인 앞에서 계약을 공증받는 방식으로 체결
- 계약종료: 역모기지와는 달리 상속인은 담보주택에 대한 권리가 없음

□ (Nuda Propiedad) 주택의 소유권을 계약 시점의 주택 가격에 판매하고, 주택의 용익권을 인정받아 집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판매하는 고령층의 나이가 어릴수록 주택 가격이 낮아지는 편

- 지급방식: 일시금으로 받거나 종신행 월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음
- 계약종료: 역모기지와는 달리 상속인은 담보주택에 대한 권리가 없음
- 세금 혜택: 65세 이상의 경우 개인 소득세에 대하여 공제 혜택이 있음

8) 아일랜드

□ (Home Reversion) 주택의 일정 지분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Home Plus에서 단독 공급 중임

- (가입조건) 연령, 주택가격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연령: 만 55세 이상
 - 주택 가격: 120,000 유로(약 1.7억) 이상
- (금액) 가입자가 희망하는 담보주택 매각 지분중 현재 가치의 50%에 해당하는 대금을 받게 됨
- (지급 조건) 월지급금과 일시인출금 가능, 일시인출금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한도가 결정됨
- (특징) 담보주택의 현재 가치에 기반하여 지분 매각 금액을 받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점의 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 이익이나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매각한 지분에 대한 상승분을 받을 수 없음

〈표 11〉 국가별 매각방식 상품 비교

	영국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호주	스페인			
상품명	Home Reversion	Viager	리버스백	Lease Buyback Scheme	Home sale Proceeds Sharing	Equity Release Agreement	Venta con Alquiler Garantizado	Renta Vitalicia Inmobiliaria	Nuda Propiedad
운영주체	민간 금융기관 (Reversion Company)	개인간 사적계약	개인간 거래 (부동산회사나 투자자)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민간 금융기관 Bendigo Bank	민간 금융기관 (은행, 부동산 투자펀드)	개인간 거래	개인간 사적계약	개인 간 거래거나 전문 기관이 중개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이 없는 상품도 있음)	사적 계약으로 가입 조건 없음	사적 계약으로 가입 조건은 크게 없음	만 65세 이상 소득 14,000달러 미만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사적 계약으로 가입 조건은 크게 없음	65세부터 이용할 수 있으나 75세 이상에게 권유	상품별로 다르나 대개 65세 이상
담보조건	£ 80,000이상 주택	-	-	HDB 공급주택 (잔여기간 20년 이상)	시드니, 멜버른 주택만 가능	-	-	-	-
지급금액조건	최저 £ 10,000	일시금은 매매 대금의 20~30%만 가능	매매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CPF 은퇴계정 추가 가능액까지 판매가능 잔여 임대기간 5년이상 	65%이내의 지분을 판매가능	지분 판매가격	매매대금	고령자가 집의 소유권을 판매	주택의 소유권을 계약 시점의 주택 가격에 판매
지급방식	일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금 월지급금 	일시 지급	월 지급금 (연금계정에 적립)	일시 인출금은 \$25,000~1,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지급 월지급금 	일시 지급	월지급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지급금 일시금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신형 기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내 임대계약 이후 갱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기간〉 종신형 기간형 (5, 10, 12, 15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기간〉 종신형 기간형 (5, 10, 12, 15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신형 기간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 거주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약을 통해 일정 기간 이후 매매대금 및 계약 비용 상환시 담보주택 구입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주택의 잔여 임대기간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의 일부 지분만 판매하는 방식 금융회사가 계약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분 수익금을 받아가는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보주택 지분을 판매하고 금액을 일시, 월지급금의 형식으로 받고, 대신 매각한 주택 지분만큼의 수수료(임대료)를 지불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구매자와의 임대 계약을 통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방식 해당 부동산 등록부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신 용익권을 인정받아 거주 공증인 앞에서 계약을 공증받는 방식으로 체결 역모기지와는 달리 상속인은 담보주택에 대한 권리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의 용익권을 인정받아 집에 거주 65세 이상의 경우 개인 소득세에 대하여 공제 혜택이 있음

참 고 문 헌

강성호 외(2022)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1): 사적연금 정책방향. 보험연구원, CEO Report 2022-3호

고제현(2022)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와 주택연금, 주택금융리서치 제27호 pp.36-45.

고제현·강영신(2018)최근 일본 민간 역모기지 상품 특징, 주택금융연구원 이슈리포트 18-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8.8) 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9일부터 주택 매입공고

금융투자협회, 2022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

김보영(2020)주요국의 금융교육 현황 및 특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Zoom

김영도·신용상(2018)자본시장을 통한 유동화 방식의 역모기지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KIF 연구보고서 2018-07 한국금융연구원.

김진(2005)주택을 이용한 연금보완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25권 pp.173-190.

농지은행처(2022.1)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

백인걸·고제현(2019) 해외 역모기지 사례 연구 -공적 역모기지 중심으로, 주택금융연구원 이슈리포트

안지희(2020)자동가치산정모형의 제도와 실태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한부연 2020-09

유선중, 『외국의 역모기지 사례』, 집문당, 2006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국민은행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지은행 홈페이지

농협 홈페이지

신한은행 홈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 고 문 헌

BBVA 홈페이지(<https://www.bbva.es>)

CHIP 홈페이지(<https://www.chip.ca>)

Equity release Council 홈페이지(www.Equityreleasecouncil.com)

Equity release sheme 홈페이지(www.equity-release.eu)

HUD 홈페이지(hud.gov)

Hipoteca inversa(<https://www.helpmycash.com/hipotecas/hipoteca-inversa/>)

HKMC 홈페이지(www.hkmc.com.hk)

Homeplus 홈페이지(<https://www.plus.ie>)

JHF(일본주택금융지원지구) 홈페이지(<https://www.jhf.go.jp>)

Óptima Mayores(<https://optimamayores.com/hipoteca-inversa/>)

Santander 홈페이지(<https://www.bancosantander.es>)

Services Australia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

Spryfinance 홈페이지(<https://www.spryfinance.ie>)

viager-europe 홈페이지(<https://www.viager-europe.com>)